피해자 지침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에게～

이 지침서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신 분이나 그 가족분들에게

●경찰이 협조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발생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이용가능한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제가 담당자입니다.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　　경찰서　　과
□고속도로교통경찰대

담당자
.....
전화번호
.....

나가사키현 경찰

형사절차의 흐름

경찰

교통사고 발생

경찰에 신고·110번 신고

수사개시

사정청취
증거품의 제출
현장검증(실황조사) 입회

가해자(피의자)의 특정

임의수사
(체포하지 않음)

체포

석방

사정청취
증거품의 확인 등

검찰청

서류송치

검사에게 서류와
증거품을 인계하는 것

신병송치

검사에게 범인을 서류 및
증거품과 함께 인계하는 것
(48시간이내)

석방

구류

계속해서 범인의 신병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
(최대20일간)

검사의
사정청취

검사의 처분결정

불기소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기소(피고인)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법원

약식명령청구
(서면심리에 의하여
벌금이나 과료를 명하는
재판)

공판청구
(공개재판)

공판

증인출정

약식명령

판결

지원요원이 당신을 돕습니다 !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담당 지원요원(경찰관 등)이

- ●수사활동중의 동행
-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나 요청에 대한 대응
- ●지원제도의 설명·수속
- ●관계기관의 소개·인계

등을 행합니다.

중대한 교통사고사건등의 경우는 담당수사관이 피해자나 가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사고가해자에 관한 것

- ●가해자의 주소, 이름 및 나이
- ● 교통사고의 발생일시, 장소
- ● 수사상황

▷사고가해자의 처분에 관한 것

- ●가해자의 검거상황
- ●송치되는 검찰청, 기소·불기소 등의 처분결과, 기소된 법원

심리전문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담원이나 나가사키현 임상심리사회소속의 상담원등이 카운슬링을 합니다.

- ●잠을 잘 수 없다, 식욕이 없다.
- ● 학교나 일을 하러 갈 수 없다.

등 불안한 일이 있으시면 담당지원요원에게 신청해 주세요.

카운셀링비용은 공비로 지불해 드립니다.

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참가제도

위험운전치사상죄,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 등의 피해자나 가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피해자참가인』이 되어 형사재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에 참가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증인이나 범인(피고인)에게 질문하거나 사실 또는 법률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경찰만으로써는 피해자나 가족의 요청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나『OO로 인해 곤란에 처해져 있는데 대응가능한 기관을 모르겠다.』라는 경우에도 담당 지원요원에게 상담하시면 적절한 관계기관에 연결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 피해자지원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 시청에 절차나 상담을 하러 가고 싶지만 남의 눈치가 불편한 경우

경찰로부터 관계기관에 대해 피해자분의 관련정보나 사안개요, 요구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에서의 지원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단법인 나가사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나가사키현 공안위원회로부터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조기지원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가사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으로서, 나가사키현내에서 나가사키현 공안위원회로부터「범죄피해자등 조기지원단체」로 지정된 유일한 단체입니다.

- 법률이나 재판 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경우
- 경제적 피해의 회복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경우

등 경찰에서 대응할 수 없는 내용의도 센터의 지원담당자가 대응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 피해자지원에 정통한 변호사를 소개
-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으로 동행

등을 실시합나다.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제도

『피해자참가인』이 된 피해자나 가족은 재판출석이나 피고인질문 등의 행위를 변호사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재산능력이 일정기준(200만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피해자참가변호사)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에는 강제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는 자배책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이 있습니다.

대 비	자배책보험		임의보험
가 입	가입필수(의무)		임의
대 상	대인손해만		대인손해와 대물손해
지 불 한도액	사망	3,000만엔	보험계약 한도액까지의 보상
	상해	120만엔	
	후유장애	75만엔 ~ 4,000만엔 (1급~14급의 장애등급에 따름)	

대인손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배책보험으로부터 보상이 되며, 손해액이 보상액을 상회하는 부분은 임의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이미지도>

교통사고상담소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 손해배상청구, 과실비율이나 보험 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상담원이 공정·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하고 문제해결을 돕습니다.

나가사키현 교통사고상담소　월~금 9:00~16:00
나가사키시 오노우에마치 3-1 (나가사키현청내)
전화번호 095-824-1111

정부의 보장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자배책보험의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뺑소니를 당해서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
- 사고 낸 상대방이 자배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등에 정부(국토교통성)가 피해자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손해를 전보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상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회사에 문의해 주세요.

수사에 대한 협조요청.

경찰은 사고상황과 원인 등 가해자의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나 가족분들께는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정청취

사고를 담당하는 수사관(경찰관)이 사고상황 등에 대해서 자세한 사정을 물어볼수 있습니다

현장검증(실황조사) 입회

사고상황이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현장 등에 입회를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품의 제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나 소지품, 타고 있던 차량 등을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품으로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협조해 주시는 도중에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경우에는 담당수사관(경찰관)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